

## 상하이시 부가가치세 개혁의 주요 내용과 평가

노수연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 (syno@kiep.go.kr, Tel: 3460-1284)

이상희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연구원 (shlee2@kiep.go.kr, Tel: 3460-1287)



## 차 례 ● ● ●

1. 상하이시 부가가치세 개혁의 배경
2. 상하이시 부가가치세 개혁의 주요 내용
3. 평가 및 전망

## 주요 내용

- 2011년 10월 26일 중국정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상하이시의 일부 업종에 대해 시범적으로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해 징수할 것임을 밝히고, 11월 16일 상하이시 세제개혁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공포함.
  - 기존에 영업세를 징수하던 일부 서비스업종에 대해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고, 업종별로 △ 교통운수 업은 11% △ 연구개발 및 기술 서비스, 정보기술 서비스, 문화창의 서비스업 등은 6%의 세율을 적용함.
  - 부가가치세로 전환되어 징수되는 영업세 수입은 개혁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상하이시에 귀속됨.
- 상하이시가 이번 세제개혁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유는 △ 상하이시를 국제적인 서비스업 도시로 발전시키려는 중앙정부 및 상하이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고, △ 상하이시 세무국을 국가 및 지방세무국이 통합 운영하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인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이번 개혁으로 인해 상하이시 세수는 단기적으로는 감소할 전망이다, 서비스업 전반 및 개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 및 규모에 따라 편차가 클 전망이다.
  - 영업세가 부가가치세로 전환되면서 중복과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세수가 단기적으로는 감소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상하이시의 정제된 서비스업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이번 개혁대상에서 건설업, 우편·통신, 금융보험 등 서비스업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상하이시 서비스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음.
  - 또한 세제개혁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 기업의 규모 및 특성별로 편차가 클 전망이다.

# 1. 상하이시 부가가치세 개혁의 배경

## 가. 중국 부가가치세 개혁의 배경과 경과

■ 중국은 일부 서비스업에 대해 부가가치세(增值稅) 대신 영업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서비스업 발전에 장애가 되어 왔음.<sup>1)</sup>

- 영업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원칙적으로는 중복과세가 허용되지 않으나, 영업세의 경우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중복 과세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부담이 큼.
- 또한 영업세 징수대상인 서비스업의 납세부담이 평균적으로 제조업보다 높아 서비스업 발전을 저해함.
- 제품을 수출할 때에는 중국 국내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납부한 각종 세금을 반환해주는 데 반해, 용역을 수출할 때에는 세금을 반환해주지 않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없음.

표 1. 중국의 현행 영업세와 부가가치세 제도

|          | 영업세                                                                                                                  | 부가가치세                                                                                                         |
|----------|----------------------------------------------------------------------------------------------------------------------|---------------------------------------------------------------------------------------------------------------|
| 과세대상 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산업 중 건설업</li> <li>• 3차 산업 중 도소매업, 가공, 수선, 교체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산업 중 공업</li> <li>• 3차 산업 중 도소매업과 가공, 수선, 교체 서비스업</li> </ul>       |
| 세율       | 3~20%                                                                                                                | 13% 또는 17%                                                                                                    |
| 납부세액 계산법 | 매출액×세율                                                                                                               | 매출세액-매입세액                                                                                                     |
| 세수 귀속    | 지방세 100%                                                                                                             | 국세: 지방세=75:25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거래단계마다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중복과세 현상이 발생</li> <li>• 지방세수의 최대 세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되고,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함</li> <li>• 국가 세수의 최대 세원</li> </ul> |

주: \* 교통운수업, 금융보험업, 우편통신업, 문화체육업, 오락산업 및 기타 서비스업과 무형자산의 양도, 부동산 판매가 해당됨.  
자료: KOTRA(2011. 10. 31), 「증치세와 영업세 개혁 상하이시 시범실시」; 언론보도 종합.

■ 따라서 중국정부는 중복과세를 방지하여 기업의 과세부담을 줄이고 가격경쟁력을 높여 서비스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1979년부터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왔음(표 2 참고).<sup>2)</sup>

1) 『人民政协报』(2011. 4. 13), 「营业税应成“十二五”财税体制改革重点」.

2) 참고로 중국 재정부는 2011년 10월 31일 ‘부가가치세 및 영업세 임시조례시행세칙 수정에 관한 결정(增值税和营业税暂行条例实施细则的修改决定)’을 발표하고, 1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와 영업세 징수의 최저기준을 상향 조정함.

표 2. 중국 부가가치세 개혁 경과

| 연도    | 주요 내용                                                                 |
|-------|-----------------------------------------------------------------------|
| 1979년 | 최초로 부가가치세(增值稅)를 도입해 상판(襄樊), 상하이(上海), 류저우(柳州)의 기계 등 5종 재화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 |
| 1984년 | 부가가치세 조례(초안)를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기기·기계, 자동차, 철강 등 12종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       |
| 1994년 | 부가가치세 징수범위를 재화 일체와 가공수리 용역으로 확대하고, 기타 용역과 무형자산 및 부동산에 대해서만 영업세 징수     |
| 2009년 | 투자유치와 기술발전 촉진을 위해 부가가치세 개혁을 단행하고 기기설비를 부가가치세 공제 범위에 포함시킴              |

주: \*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함(부가가치세법(일부 개정 2010.12.27, 법률 제10409호)).

자료: 중국 국가세무총국 관계자 기자회견 내용 정리(2011. 11.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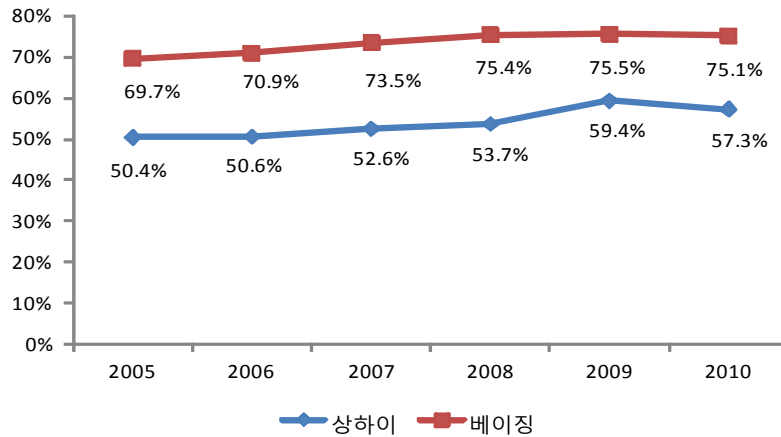
- 특히 2011년부터 시작된 ‘12차 5개년 계획’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영업세 등 세수를 줄일 계획임을 밝히면서<sup>3)</sup>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해 징수하는 개혁이 가속화됨.

## 나. 상하이시의 세제개혁 시범지역 지정 배경

- 상하이시는 오는 2020년까지 세계적인 경제, 금융, 항운·해운, 무역 허브로 성장할 계획이나, 핵심 산업인 서비스업의 성장이 최근 다소 정체되어 이를 촉진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상하이시는 2015년까지 서비스업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65%까지 제고할 계획이나, 현재 서비스업의 성장은 다소 정체되어 있음.
- 상하이시의 서비스업은 1999년에 전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선 이후 줄곧 50~60% 사이에 머무르고 있으며, 2010년에는 2009년의 59.4%보다 낮은 57.3%에 그쳤음(그림 1 참고).
- 또한 2009년 기준으로 상하이시의 서비스업 비중(59.4%)이 베이징시(75.5%)나 광저우시(60.9%)에 못 미치고 있음.

3) 『人民日报』(2011.3. 17),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

그림 1. 상하이시와 베이징시의 서비스업 비중 비교



자료: 『上海統計年鑑』 각 연도; 『北京統計年鑑』 각 연도.

- 상하이시 정부 입장에서는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업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를 최소화해야 함.
  - 특히 2010년 상하이시 서비스업 생산총액의 약 43%를 차지한 생산자 서비스업<sup>4)</sup>에 현재 영업세가 부과되고 있어, 생산자 서비스업을 적극 발전시키려는 상하이시 정부의 계획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세제개혁은 단기적인 세수감소를 감수하고서라도 서비스업 발전에 불리한 세목인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려는 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줌.
  - 2009년 말과 2010년 초 후진타오 총서기와 원자바오 총리가 상하이를 방문했을 당시 상하이시 정부는 영업세 중복징수 문제를 제기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한 바 있음.<sup>5)</sup>
  - 이번 개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감소는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상하이시 정부가 부담하기로 함.
- 아울러 중국정부도 2009년 상하이시가 국제적인 금융, 항운·해운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서비스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던 중복과세 문제의 해결에는 미진한 상태였으므로, 세제개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상하이시 정부의 요청을 승인해줄 수밖에 없음.
- 또한 상하이시는 다양한 서비스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번 세제개혁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필요한 경험을 다양하게 축적할 수 있음.<sup>6)</sup>

■ 상하이시는 세금징수 영역이 각각 다른 지방세무국(地稅局)과 국가세무국(國稅局)을 합병하여 운영하고 있어 시범운영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함.

4) 서비스업은 수요자 유형에 따라 생산자 서비스업과 소비자 서비스업으로 구분되며, 생산자 서비스업에는 금융, 보험, 법무, 회계, 광고, 부동산, 경영 컨설팅 등이 속함.

5) 『中国经济周刊』(2011. 11. 22), 「上海试点增值税改革做“赔本买卖”图什么?」.

6) 『第一财经日报』(2011. 10. 27), 「专家称增值税扩围试点将是新一轮税制改革」.

- 본래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은 서로 다른 영역의 세금징수를 맡고 있음.
  - 국가세무국은 주로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중앙국유기업의 법인세 등을 징수, 관리하고, 지방세무국은 영업세, 중앙국유기업 이외의 법인세, 개인소득세 등을 징수, 관리함.<sup>7)</sup>
- 그러나 상하이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은 2008년 국무원의 ‘상하이시 인민정부 기관 개혁 방안(上海市人民政府机构改革方案)’에 대한 통지에 따라 조직이 통합됨.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영업세의 통합관리가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 수월함.
- 상하이를 제외한 다른 직할시 및 성의 경우,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 조직이 각각 존재함.

## 2. 상하이시 부가가치세 개혁의 주요 내용

■ 중국정부는 2011년 10월 26일 2012년 1월 1일부터 상하이시의 일부 업종에 대해 시범적으로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해 징수할 것임을 공포함.

- 이번 개혁에서는 우선적으로 상하이시의 교통운수업과 일부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기존에 징수하던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해 징수하며, 이후 일부 업종을 선택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임.
- 또한 현행 부가가치세의 기준세율인 17%와 13% 외에 11%와 6%의 세율을 추가로 신설함.

■ 재정부는 이어서 11월 16일 ‘상하이시 교통운수업 및 일부 서비스업의 영업세 징수를 부가가치세 징수로 시범전환하는 것에 관한 통지(关于在上海市开展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的通知)’를 발표하고,<sup>8)</sup> 상하이시 세제개혁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공포함.

- 교통운수업, 정보기술서비스<sup>9)</sup> 연구개발 및 기술서비스<sup>10)</sup>, 문화창의서비스<sup>11)</sup> 등이 부가가치세로 전

7) 국가 총세무국(<http://www.chinatax.gov.cn/n8136506/n8136593/n8137489/n8138239/index.html>, 검색일 2011. 12. 13).

8) 이날 발표된 규정은 ①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징수 시범방안(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方案)’ ② ‘교통운수업 및 일부 서비스업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징수 시범실시방법(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实施办法)’ ③ ‘교통운수업 및 일부 서비스업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징수 시범 관련 사항 규정(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有关事项的规定)’ ④ ‘교통운수업 및 일부 서비스업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징수 시범 과도정책 규정(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过度政策的规定)’임.

9) 컴퓨터, 통신네트워크 등의 기술을 활용해 정보의 생산, 수집, 처리, 가공, 저장, 전송, 검색 등을 하는 서비스로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련 서비스, 집적회로 설계 및 테스트, 정보시스템 서비스 등이 포함됨.

10) 신제품, 신기술의 연구개발 활동, 기술양도, 기술컨설팅, 탐사 등의 서비스가 해당됨.

11) 지적재산권, 디자인 및 광고 관련 산업, 공연 및 전시회 개최 서비스업 등을 지칭함

환되는 업종이며, 이들 업종에 대해 신규로 추가된 6% 또는 11%의 세율을 적용함.

- 교통운수업은 11%의 세율을 적용하고, 연구개발 및 기술 서비스, 문화창의 서비스업은 6%의 세율을 적용함(표 3 참고).

표 3. 시범개혁 대상업종별 적용세율 변동

| 업종                         | 적용세율      |             |
|----------------------------|-----------|-------------|
|                            | 변경 전(영업세) | 변경 후(부가가치세) |
| 유형동산 임대서비스                 | 5%        | 17%         |
| 교통운수업                      | 3%        | 11%         |
| 물류보조 서비스*                  | 3%        | 6%          |
| 연구개발 및 기술서비스, 감정 및 컨설팅 서비스 | 5%        | 6%          |
| 문화창의 서비스                   | 5%        | 6%          |

주: \* 물류보조 서비스는 항만 서비스, 화물운송 대행업 등을 지칭함.

자료: 상하이시세무국, 「纳税指南(2011版)」(www.csj.sh.gov.cn, 검색일 2011. 11. 30); 재정부, 국가세무총국(2011. 11. 16), 「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实施办法」.

- 기술이전 등과 관련해 납세자에게 기존에 제공되던 영업세 감면정책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거나 징수 즉시 반환해주는 방식으로 유지함.
- 기존에 상하이시 납세자에게 적용되던 영업세 차액 징수정책은 세제개혁 시범기간 중에도 지속됨.
- 상하이시는 2010년 8월 ‘영업세 차액징수 관리 방법(营业税差额征税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하고, 9월부터 일부 업종에 대해 차액 세율을 적용한 바 있음. 이는 이들 업종의 세종(税种)을 부가가치세로 바꾸기 위한 사전 탐색작업으로 파악됨.
- ‘방법’에서는 영업세 과세대상인 노무, 무형자산 양도 및 부동산 판매 활동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에서 다른 업체에 하청을 준 금액 등 상하이시 지방세무국이 규정한 항목의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영업세를 부과함.<sup>12)</sup>
- 이는 기존의 영업세가 매출액 전액에 대해 부과하던 것과는 차이가 있음.
- 구체적인 대상 업종은 △ 교통운수업, △ 건설업, △ 우편통신업, △ 금융보험업, △ 광고, 특허, 화물운송, 금융거래 등 각종 대리업무 서비스업, △ 문화체육업, △ 무형자산의 양도, △ 부동산의 판매 등임.
- 부가가치세로 전환되어 징수되는 영업세는 상하이시 국가세무국에서 징수하지만, 계속 상하이시 세수로 귀속됨.

■ 상하이 세무국은 2011년 11월 24일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시범전환에 관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12) 上海市地方税务局(2010. 8. 18), 「营业税差额征税管理办法」.

의 문건에 관한 의견(关于本市贯彻落实财政部和国家税务总局有关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文件的意见)'을 발표하고, 상하이시 세무국과 산하 지국 차원에서 구체적인 업무일정을 명시함.<sup>13)</sup>

- 이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육로운송 서비스, 수로운송 서비스, 항공운송 서비스, 연구개발 및 기술 서비스, 정보기술 서비스, 문화창의 서비스, 물류보조 서비스, 유형동산 임대서비스, 감정 및 컨설팅 서비스 등 10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기존에 징수하던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함.
- 또한 2011년 11월 18일 이전부터 시범기간까지 시기별로 3단계 추진일정을 수립하고, 상하이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공동으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범징수 추진 팀을 결성함.

### 3. 평가 및 전망

■ 영업세가 부가가치세로 전환되면서 중복과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상하이시의 세수는 단기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 상하이시 정부 발전연구센터(发展研究中心)에서는 세제개혁 시범기간 중에는 영업세에서 부가가치세로 전환돼 징수되는 세수 전액이 여전히 상하이시에 귀속되지만 중복과세가 사라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100억 위안 이상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sup>14)</sup>
- 상하이시 세수입에서 영업세는 주요 세원임. 2000~10년간 세수 구성을 보면 영업세가 항상 3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임. 반면 부가가치세의 비중은 2002년 19%에서 꾸준히 하락하여 2010년에는 13.5%에 불과함(그림 2 참고).
- 2010년 상하이시 지방재정수입<sup>15)</sup>은 2,873억 6천만 위안이며, 이 중 영업세가 933억 9천만 위안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그 뒤를 이어 법인세가 606억 1천만 위안으로 2위를 차지하고, 부가가치세가 388억 6천만 위안으로 3위를 차지함.<sup>1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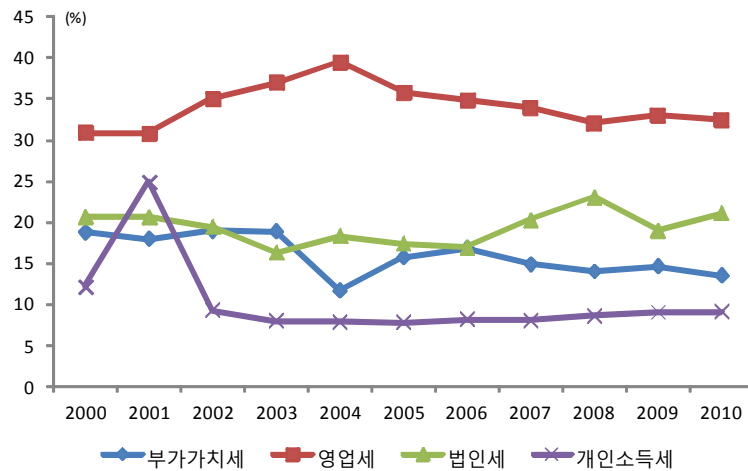
13) 上海市国家税务局, 上海市地方税务局(2011. 11. 24), 「关于本市贯彻落实财政部和国家税务总局有关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文件的意见」.

14) 『华夏时报』(2011. 12. 5), 「上海蓝本"不受欢迎", 增值税扩围改革试点幕后」.

15) 지방재정수입은 세수수입과 비(非)세수수입으로 구성되며, 세수수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함. 세수수입은 영업세,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차량선박세, 토지부가가치세, 경지점용세, 계약세 등 100% 지방에 귀속되는 지방세와 함께 중앙정부와 일정 비율로 나누어서 갖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인소득세 중 일부를 포함함.

16) 『上海统计年鉴2011』.

그림 2. 상하이시 지방재정수입 구성 비율



자료: 『上海統計年鑑』 각 연도.

■ 이번 세제개혁은 장기적으로는 상하이시의 정체된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개혁대상이 영업세를 부과하던 기존의 모든 산업이 아니라 교통운수업과 일부 서비스업에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상하이시 서비스업 전반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음.

- 상하이시 이외 지역의 기업이 세금공제혜택을 염두에 두고 상하이시 소재 업체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동기 부여가 되므로 상하이시 서비스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음.

○ 일례로 상하이시 인근의 생산업체가 광고용역을 발주할 경우, 상하이시 소재 광고회사에서 용역을 맡으면 해당 용역에 대해 6%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 다른 지역의 회사에 발주할 때보다 유리함.

- 그러나 이번 개혁에서 건설업과 우편통신, 금융보험 등 서비스업은 제외되었음.

○ 영업세 징수대상 업종인 금융보험업은 2010년 상하이시의 △ 3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에 달하고, △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4%에 달하고 있어 영업세 징수대상 업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업종임. 그러나 이번 시범개혁에서는 제외됨.

○ 금융업의 부가가치세 개혁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음. 특히 매입세액 공제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임. 그러나 금융업 개혁이 이루어져서 시중은행의 영업세 부담이 2%포인트 줄어든다면 14개 시중은행의 순이익이 평균 5.26%포인트 증가할 것임.<sup>17)</sup>

○ 또한 상하이시가 지향하는 목표에는 세계적인 금융허브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 부문의 개혁이 선결과제임.

17) 『经济参考报』(2011. 10. 27), 「增值税改革明年起上海试点 深化结构性减税」.

■ 이번에 발표된 업종별 적용세율은 업계 예상보다 다소 높으며, 세제개혁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 기업의 규모 및 특성별로 편차가 클 전망이다.

- 최종적으로 발표된 세율은 당초 업계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임.
- 물류업계에서는 납세부담을 경감시켜 해당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교통운수업의 부가가치세 세율이 6% 내외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11%로 책정되었음.<sup>18)</sup>
- 이번 개혁이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은 △ 시행시기, △ 세율의 변화, △ 가격조정, △ 수요탄력성, △ 시장점유율 변화 등에 따라 다를 것임. 또한 동종 업종의 기업이라 해도 기업의 내부 원가구조에 따라 영향 정도에 차이가 날 전망이다.<sup>19)</sup>
- 일례로 기업이 구매하는 재화나 연료비 등은 매입세(進項稅)<sup>20)</sup>이므로 공제가 가능함. 따라서 이들 공제액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부가가치세 개혁으로 인한 손해가 커지고 매출이익(gross profit)이 늘어날 수 있음.<sup>21)</sup> 그러나 반대로 이 비율이 낮은 기업은 부가가치세 적용세율이 기존 영업세율보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납세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음.

#### 글상자 1. 수익 임계치 계산법

$$\text{수익 임계치}(C)^{1)} = (T-t)/T_0$$

T = 개혁 후 부가가치세율

t = 현행 영업세율

T<sub>0</sub> = 공제가능 지출액에 대한 적용세율 = 17%<sup>2)</sup>

예. 교통운수업 수익 임계치 =  $(11-3)/17 = 0.4705 \approx 47.1\%$

주: 1) 기업의 납세부담이 개혁 이전보다 줄어들이기 위해서 공제가능 지출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비중을 말함.

2) 공제가 가능한 지출항목은 원자재, 수입 재화, 유형고정자산(PPE: Property, Plant, Equipments) 구매비용, 운송비가 중심이며, 이들 비용에 대해서는 17%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자료: Goldman Sachs(2011. 11. 24), 「VAT/BT Reform-a Boost for Low Margin Services Sectors」 응용.

- 납세부담이 개혁 이전보다 경감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공제가 가능한 지출항목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 교통운수업의 경우 47.1% 이상, △ 물류보조 서비스업은 17.6% 이상, △ 연구개발 및 기술 서비스, 정보기술 서비스, 문화창의 서비스, 감정 및 컨설팅 서비스업은 5.9% 이상, △ 유형동산 임대서비스업은 70.6% 이상이어야 함(글상자 1 참고). **KIEP**

18) 현행 부가가치세율 17%와 13%를 그대로 교통운수업 영업세율에 대응해보면 각각 5.99%와 4.58%에 상당해 교통운수업에 적용되는 영업세율인 3%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21世纪经济报道』(2011. 10. 26), 「增值税扩围破题」).

19) 高盛高华证券(2011. 11. 29), 「增值税营业税改革将推动低利润率服务业增长」.

20)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매출할 때 발생하는 부가세인 매출세와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부가세인 매입세로 나뉨. 매출세가 매입세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납부하고, 그 반대이면 그 차액을 환급받음.

21) 『经济观察网』(2011. 11. 30), 「普华永道称上海增值税扩围将增加部分企业税负」.